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2 474
결재일자	2016.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보도여부	

주무관	청소년복지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정주연	곽노성	정연욱	06/17 고한석
협 조			

2016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지원 계획

2016.6.17.

강 북 구
[교육지원과]

2016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지원 계획

여름방학기간 중 가정 내에서 식사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및 아동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기본방향

- 급식대상아동 적극 발굴 및 누락 방지
- 저소득아동 중심의 급식지원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
- 여름철 식중독 발생 대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지원 제공

II 여름방학 대비 아동급식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016. 7. 18. ~ 2016. 8. 15.(여름방학 중)
 - ※ 학교별로 방학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급식대상자 선정 : 2016. 6. 27까지
 - ※ 6.27일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선정 지속 추진

■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기준: 1식당 5,000원
 - ※ '16.7월부터 1식 4,000원→5,000원으로 인상
- 지원유형: 방학 중 조·중·석식 (개인별 필요식 지원)
- 지급방법: 지역별 여건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도시락급식(각 가정으로 배달)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편의점 (전자카드 이용) 등

■ 급식지원 실적

- 결식아동 지원 예정자 현황: 총2,277명(방학중: 2월 기준, 연중: 6월 현재)
 - 총 2,277명: 926명(방학중 대상자) + 1,351명(연중 대상자)
- 급식지원자 동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구분													
	삼양	마아	송중	송천	삼각산	번1	번2	번3	수유1	수유2	수유3	우이	인수	
방학중 926	172	35	41	48	44	41	56	74	48	72	58	83	154	
연중 (1,351)	(123)	(35)	(93)	(161)	(43)	(40)	(145)	(247)	(103)	(95)	(58)	(96)	(112)	

● 취학형태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구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방학중 926	0	306	317	303	0
연중 (1,351)	(0)	(614)	(352)	(380)	(5)

※ 기타: 학교 중퇴 등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미만의 자를 말함

● 소득수준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 타 (저소득)
합계			
방학중 926	201	450	275
연중 (1,351)	(543)	(398)	(410)

III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845,000	27,133	5,170	27,563
		(28,910)	(5,509)	(29,368)
2인	1,439,000	44,205	20,848	44,724
		(47,100)	(22,214)	(47,653)
3인	1,861,000	56,978	38,881	57,745
		(60,710)	(41,428)	(61,527)
4인	2,284,000	69,940	61,308	70,433
		(74,521)	(65,324)	(75,046)
5인	2,706,000	83,609	84,117	84,591
		(89,085)	(89,627)	(90,132)
6인	3,128,000	95,782	101,257	96,971
		(102,056)	(107,889)	(103,323)
7인	3,551,000	109,916	121,260	111,270
		(117,115)	(129,203)	(118,558)
8인	3,973,000	121,575	136,112	122,806
		(129,538)	(145,027)	(130,850)
9인	4,396,000	135,514	151,923	137,491
		(144,390)	(161,874)	(146,497)
10인	4,818,000	147,696	164,955	149,850
		(157,370)	(175,760)	(159,665)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행복e음 입력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 선정방법

- 2016년도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계속 지원여부 재판정

- 전년도 상반기(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재판정 실시
- 전년도 여름방학 이후 선정된 아동은 전화 안내 등으로 계속지원여부 확인

※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해당 지자체에 명단 통보

- 신규 신청자 및 사각지대 아동 수시 조사를 통해 선정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한 신청,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신규 발굴에 따른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하여 선정

● 선정결과 통지

- 동장은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 및 아동(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통지내용: 급식지원 적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급식지원 방법 등
- 신청 결과 급식지원 부적합 통지를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소명기회 부여

IV

세부 추진계획

■ 급식대상자 적극 발굴 및 누락 방지

●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지원 매뉴얼」에 따라 급식대상자 발굴 · 선정

- 지역별 여건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 일반음식점(전자카드),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등), 도시락 배달 중 선택
- 각급 학교를 통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및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전교생에게 교부 조치

● 기존 급식지원 대상자 이외 사각지대 결식아동 적극 발굴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중 결식 우려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파악 및 추천 의뢰
- 급식신청은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홍보 안내문 배포, 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
- 결식아동 신고전화 운영(120 다산콜 연계) 안내
- 통·반장, 시민·종교단체 등의 추천, 아동 본인과 보호자의 신청을 통한 급식 대상자 추가 발굴

●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

- 사업목적: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도시락배달 지원으로 건강한 식습관 도모
- 사업시행: 2016.7.1 부터
- 사업대상: 연중(모두,평일) 및 방학 중 이용아동 중 초,중등학생 대상
 - 신선한 도시락 배달을 위하여 귀가시간이 늦은 고등학생은 제외하되, 신청할 경우 지원가능
 - 2016년 7월에는 연중대상 아동만 지원하되, 겨울방학부터 대상자 점진적 확대
- 지원방법: 주1회 (석식 또는 중식) 배달지원
- 배달업체: 행복도시락 노원지점

● 급식전자카드 사용가능한 지정음식점 지속 확대 및 관리

- 급식 전자카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음식점 확대
 - 지정음식점 확대 시 동별 음식점 유형별(한식, 중식, 양식 등) 비율을 감안하여 한식위주의 음식점을 지정
- 지역음식점중앙회, 지역 유지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정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변경사항 수시로 반영하여 불편 최소화
-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이 이용 중에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계자 사전 지도

● 단체급식 가능시설 적극 활용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 가능시설 최대한 활용
- 급식 제공 뿐 아니라 방학중 아동 보호, 교육지원 등 아동프로그램 연계 지원
-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서 아동급식 병행 할 수 있도록 유도
 - ※ 방학 중 학교에서 급식 하는 경우 급식비(학교급식 단가로) 지원

■ 아동급식 전자카드(꿈나무카드) 운영 철저

- 급식대상 아동(보호자), 음식점 등에 급식아동 전자카드 운영의 근본취지 적극 안내
 - 이용 아동의 수치심 감소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공
- 전자카드 이용 신청 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자카드 제공
 - 카드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전자카드 배부시 안내지(카드이용방법, 주의사항, 지정음식점 등) 동봉하여 배부
- 전자카드를 방학기간만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전자카드 관리 철저
 - 매 방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아동이 카드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방학 종료 시 카드를 회수하는 등 관리 철저

■ 폭염, 폭우, 휴가 등으로 급식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대비

- 폭염, 폭우, 휴가 등으로 인한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대상 아동 사전 파악
- 음식점 등 이용 불가시 사전 안내, 급식방법 변경 제공
 - 이용가능한 대체 급식소 및 음식점 안내
 - 통·반장, 지역유지, 종교단체, 이웃 등을 통한 급식 실시

■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 식중독 예방 및 급식사고 대책마련
 - 지정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에 “식중독예방수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 원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
 - 급식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숙지를 통한 신속한 대처
- 아동급식사업에 대한 점검 실시 (방학 전, 방학 중 각 1회)
 - 위생 및 청결상태 점검
 - 식단의 내용 등 영양관리 및 급식 질 전반에 관한 사항 등 확인

VI

추진일정

- 2016. 6. 20.(월): 여름방학 지원 계획 시달
- 2016. 6. 20.(월)~ 6.30(월): 여름방학 급식 신청 안내·홍보 및 대상자 선정
- 2016. 7. 4.(월): 2016년 상반기 아동급식 위원회 개최
- 2016. 7.22.: 아동급식지원 실적 보고

VII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급식대상자 적극 발굴
 - 급식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여름방학 집중조사 후 급식지원 명단 구 보고: 2016.6.27(월)까지
 - 명단제출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 및 선정 계속 진행
- 동 관내 음식점 및 시설에서 아동 급식 관련 식중독 발생 시 즉시 보고

붙임: 1.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1부.
2. 2016년 학교별 방학기간 1부. 끝